

한국전력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정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8772
----------	-------

발의연월일 : 2026. 4. 30.

발 의 자 : 박 정 · 유동수 · 김태선
서왕진 · 권칠승 · 이학영
김원이 · 이춘석 · 김병주
송석준 · 김성원 · 남인순
김현정 · 전현희 · 안호영
고민정 · 허 영 · 정혜경
김남희 · 박홍배 · 허종식
곽상언 의원(2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인공지능의 개발과 데이터센터의 증가 등으로 전력수요가 크게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이를 뒷받침할 전력망 확충이 필요한 상황임. 그런데 전력망 구축 사업을 수행하는 한국전력공사의 재원 부족으로 충분한 전력 인프라가 갖추어지지 못하고 있음.

이에 한국전력공사가 발전 · 송전 · 배전 등 영업과정에서 전기요금 선납 등을 통해 선수금을 조성하여 전력망 확충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고, 아울러 이렇게 마련된 선수금이 전력 인프라 확충 사업에 우선적으로 사용되도록 그 용처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14조제3항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박정위원이 대표발의한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8773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한국전력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전력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③ 제1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사업의 선수금은 해당 사업에 필요한 비용과 전력망 확충 사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용도 외에는 사용하지 못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선수금 처리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발생하는 선수금부터 적용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4조(이익금의 처리) ①·② (생 략) <u><신 설></u>	제14조(이익금의 처리) ①·② (현행과 같음) <u>③ 제13조제1항제2호에 따른</u> <u>사업의 선수금은 해당 사업에</u> <u>필요한 비용과 전력망 확충 사</u> <u>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u> <u>업의 용도 외에는 사용하지 못</u> <u>한다.</u>